

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3. 3. 4

개정 : 2014. 3. 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7조 제3항에 의거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장애학생”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된 본 대학 재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)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.

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

제4조(설치)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교내생활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입학학생처 산하에 둔다. <개정 2014.3.1.>

제5조(업무)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 교육,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학교생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의 상담
4.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6조(조직) ① 센터장은 학생팀장으로 한다.

② 센터에는 센터장 외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유관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7조(설치)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교무팀장, 기획팀장, 총무팀장, 시설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장애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 교육 복지 지원의 기본 방침 및 주요사항
2. 학사, 대학생활, 진로 등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 시 유관부서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 <2013.3.4>

1. 이 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3.1>

1.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